

서울특별시의회

제158회 임시회

2005년도제1회여성가족정책관소관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05. 9.

보건사회위원회

2005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안번호	779
------	-----

I. 소관부서 회부 안건

- 2005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II.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5. 8. 19
- 회부일자 : 2005. 8. 25
- 안건상정 : 제158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 2005. 9. 5(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가결)

III.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

- 여성가족정책관의 일반회계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513억 8천 8백만원보다 277억 2백만원(증 7.9%)이 증액된 3,790억 9천만원이고, 총 9개 사업임

<표1> 2005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일	반	351,388	379,090	27,702	7.9
회	계				

Ⅲ. 추경예산안의 사업분야별 내역

□ 소외여성의 자립기반 확대를 위해

- 선도보호시설 지원 6억 4천 1백만원은 성매매 피해여성 및 청소년을 위한 시설 운영비와 장기그룹홈(3개소) 신규 설치·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 부담분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른 법정시설종사자 수 증원에 따른 수당증가분 및 신규 그룹홈 입소예정자에 대한 사회적응 훈련비를 반영한 것이며
- 성매매종사여성 재활 지원 3억 3백만원은 성매매밀집지역 피해 여성에 대한 현장상담센터 4개소와 성매매피해여성 일반상담터 7개소 운영비 부족분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부담분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른 법정시설 종사자 증원에 따른 종사자수당 증가분을 반영한 것임

□ 건강한 아동 및 가정 육성을 위해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6억 1천 9백만원은 “시립소년의집”의 종사자수 증가분(22명)에 대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부족분을 추가반영한 것이며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3억 4천 3백만원은 아동생활시설 6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로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반영한 것임
- 소년소녀가정 및 결식아동 지원 15억 5천만원은 결식아동 급식비 및 아동급식 취사장비 설치비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반영한 것이며
- 모자보호시설 운영 1억 7천 7백만원은 모자복지시설 인건비, 관리운영비, 자립정착금 등 연간 소요액 부족분을 반영한 것임

- 저소득 부·모자 가정 지원 30억원은 경기침체 및 이혼가정 증가 등으로 인한 저소득 부·모자 가정 증가 및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증액(20→50천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 교부에 따른 시비분담분 등을 반영한 것이며

□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 강북지역 청소년수련시설 조성 193억 8천 7백만원은 부지매입비 잔액 135억원 및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공사비 등 연내 추가 소요예산을 반영한 것이며
- 영어체험마을 위탁운영 6억 8천 2백만원은 급식단가 인상분 (1,500원→3,300원) 및 홈페이지,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등 준공공요금 성격의 경비를 추가 반영한 것임

IV. 검토 의견(전문위원 김종식)

- 송파영어체험마을 민간위탁금(6억8천만원) 편성(부적정)에 대한 의견

<송파영어체험마을 예산편성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증액	산출내역	
민간위탁금 (송파영어 체험마을)	681,990	계	681,990
		1.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7,000
		2. 냉·난방 유지관리비	158,865
		3. 강사 및 학생식비 지원 (375명 × 1,800원 × 15식 × 49주)	496,125
		※당초 1,500원/1식 → 3,300원/1식(차액 1,800원)	

- 송파영어체험마을은 저비용 양질의 영어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외화 유출을 방지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립한 공공시설임.

- 동시시설은 공모를 통하여 운영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중 가장 잘된 제안서 즉 영어체험마을을 잘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헤럴드미디어」에게 자신들이 제출한 제안서대로 그리고 관련법령과 협약서를 준수할 것을 전제로 운영권을 위탁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면 여기에서 제안서의 내용과 협약서의 내용중 주요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서중 주요관련 내용의 요약>

- 가. 자립형으로 운영함
1차년도 결손액 10억원이 발생하지만 이를 부대사업 운영 등으로 상계하기로함. (제안서 63쪽 참조)
- 나. 식대 단가는 1식당 원가 1,500원 / 1식당 단가 2,500원으로 운영함 (제안서 197쪽 참조)
- 다. 서울시에 건의 및 지원요청 사항
- 자립형으로 운영함. 다만, 저소득층 자녀(약2억)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참가비만(약1억원) 서울시에 지원요청하기로 함 (제안서 233쪽 참조)

<협약서 주요관련 내용>

- 제8조(사업비 및 회계관리)
- ① “을”은 별첨2 체험마을 운영 “3개년간 추정손익계산서”에 따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체험마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사업비)을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운영비용의 부족시에는 “을”의 전입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저소득층의 프로그램 참가비용, 체험마을의 개관이후 “을”의 요청에 따른 시설물의 보완과 주요장비 및 비품의 추가구입에 필요한 비용, 기타 “갑”의 필요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갑” : 서울특별시장
“을” : (주)헤럴드미디어 대표이사 홍정욱

1. 예산편성 부적정에 대한 의견

-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민간위탁금 6억 8천만원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냉·난방 유지·관리비, 그리고 참가학생 및 강사의 식비를 지원코자 편성하였음.
- 이와 같은 사업은 영어체험마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즉 사업비임. 따라서 협약서 제8조(사업비 및 회계관리) 제1항중 “영어체험마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사업비)은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운영비용의 부족시에는 “을” (헤럴드미디어)의 전입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수탁자인 헤럴드미디어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그리고 제8조(사업비 및 회계) 제2항의 규정은 저소득층의 참가비용, 장비 및 비품의 추가구입 등 자산의 증가에 대한 비용, 그리고 서울시에서 특별히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그 비용 등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예산안은 저소득층의 참가비는 이미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렇다고 자산의 증가 비용도 아니며 서울시에서 특별히 추가하여 시행한 사업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없는 사업비라 사료됨.
- 또한 수탁자가 제안한 제안서에는 1차년도에는 1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지만 부대사업 운영 등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고 제안하였음. 특히, 제안서 내용중 서울시에 지원을 요청한 것은 저소득층의 참가비만 지원하면 나머지는 자립형으로 운영하겠다는 제안서의 내용을 미루어 볼때 당연히 수탁자가 부담해야만 할 사업비라 할 것이므로 동예산편성안은 부적정한 예산편성안이라 사료됨.

2. 민간위탁금 지원의 좋지 못한 선례에 대한 의견

- 영어체험마을의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가 제안한 제안서의 내용이 타 경쟁사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기 때문일 것임. 따라서 수탁자인 (주)헤럴드미디어에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 자신이 제안한 제안서의 내용과 협약서의 내용을 존중하여 서울시에서 위탁한 서울영어체험마을을 제안하였던 제안서에 의거 성실하게 운영하여야만 할 의무가 있는 것임. 그러나 동예산안의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6억8천만원은 자신들이 제안한 제안서에서는 자립형으로 운영하겠다고 제안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서울시에 보조금을 요청한 것임. 이는 사업체(영어마을)을 우선 위탁받고 보자는 식의 제안서 제출로 운영할 수도 없는 제안서를 제출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후 적자가 발생하면 운영하기가 어려워니 보조해 주시오 하면 시민의 세금인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러한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됨. 물론 수탁자인 헤럴드미디어에서는 그런 생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지는 않았겠지만 본의아니게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기만행위요, 업무방해이며, 정말 성실하게 제안서를 제출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도 있었던 타 경쟁사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라 할 것임.
- 또한 영어체험마을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의 식단이 부실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함이거나 사회여론 등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 때문에 어쩔수 없이 서울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다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면 더더욱 문제가 있다 할 것임. 제안서상 식단의 부실함이 있었다면 어떻게 수탁자로 선정이 되었는지가 의문시되고 설령 실수로 지적을 못했다 하더라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탁자는 자립형으로 운영

하는 성실함을 보여야 할 것이며, 또한 시민의 세금인 서울시의 예산을 몇 안되는 참가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특혜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정말 식단이 부실하여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참가자로 하여금 부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종합의견

- 처음 운영하는 서울영어체험마을을 위탁하여 운영한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할 것이며, 특히 본예산 편성후 특별하게 변화된 것도 없는 상태에서 추경예산안으로 민간위탁금(보조금)을 편성한 것은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할 것임. 또한 사업만 따고 보자는 식의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긴다면 선량한 타경쟁사에게 수탁기회를 박탈하는 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추후 서울시의 다른 위탁사업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할 것임. 그리고 특정 업체에 지원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지원하였다면 이는 특혜시비의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며, 또한 잘못 편성된 예산안을 승인한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서울영어체험마을 민간위탁금(6억8천만원) 편성안은 부적절하다 할 것임.

V. 예비심사 결과

1. 추경예산안의 주요문제점
 - 없음
2.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미 구성

3. 심사결과

- 일반회계 : 수정가결
- 특별회계 : 원안가결

4. 소수의견의 요지

- 영어체험마을 운영지원 예산중 학생 및 강사식비 지원비 4억 9천 6백만원 삭감의견

5.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6. 예산안 수정내역

- 따로붙임

붙임)

I. 수정동의 내용

● 부두완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2005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동학대예방센터 5개소 운영경비 1억 2천만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 위원 여러분! 정회시 논의된 바대로 「2005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상 말씀드린 증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II.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수정내역

1. 총괄

(단위 : 백만원)

전략목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수정예산안
		증액	감액	
총계	379,090	120	-	379,210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4,661	-	-	14,661
◦ 소외여성과 아동지원 확대로 자활능력 향상	71,734	120	-	71,854
◦ 보육수요 충족 및 서비스 향상	207,358	-	-	207,358
◦ 젊은 문화도시 만들기	80,536	-	-	80,536
◦ 일반예산	4,801	-	-	4,801

2.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안

○ 일반회계 수정가결

(단위 : 백만원)

전략목표	사 업 명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비고
		계	증 액	감 액	
총 계	1건	120	120	-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	-	
○ 소외여성과 아동지원 확대로 자활능력 향상		120	120	-	
	아동학대예방센터 5개소 운영경비	120	120	-	
○ 보육수요 충족 및 서비스 향상		-	-	-	
○ 젊은 문화도시 만들기		-	-	-	
○ 일반예산				-	